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9. 23.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8월 21일 회부

다. 상 정 일 자 : 제59회 임시회 제6차 사회건설위원회('98. 9. 2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생활국장 조수만)

가. 제안이유

-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및 배출방법(안 제4조 및 제5조)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안 제6조)
-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안 제7조)
- 음식물 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그 기준(안 제8조 제2항, 안 제14조 제1항 별표2)
-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의 근거확보(안 제1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유제한)

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95. 8. 4(법률 제4970호) 개정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이 1996. 1. 19(대통령령 제4897호)에 개정되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1997. 7. 19(환경부령 제27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대도시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와 대·소형 유흥업소 또는 식당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음식물로 인하여 환경오염 뿐만 아니

라 쓰레기 매립장에서도 2005년까지 일반 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금지한다는 계획이 있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의무화 또는 적정배출토록하고 또한 재활용으로 가축의 사료나 비료화 하는 등 다각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며 이의 수집이나 운반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물론 불이행시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주어 감량화 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9월 21일 시종덕 위원외 1인

나. 수정이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등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 배열이나 주민의 부당행위와 조례 적용의 적정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다. 주요골자

- 안 제4조를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5조 제3호는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1’과 같이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

5.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 6 호
----------	-------------

제안년월일 : 1998. 9. 21.
발 의 자 : 시종덕 위원외 1인

1. 수정이유

생활폐기물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등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 배열이나 주민의 부당행위와 조례 적용의 적정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수정주요골자

- 안 제4조를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한다”로 수정하고,
- 안 제5조 제3호는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1’과 같이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①항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 1’과 같이 정한다”를 “분리배출 지역을 정한다”로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사용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

② 생 략

수정안대비표

=====

원안	수정안
<p>제4조(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 <u>구청장은</u>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u>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u> <u>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별표1”과 같이 정한다.</u></p> <p>② 생략</p>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p> <p>1. (생략)</p> <p>2. (생략)</p> <p>3. (신설)</p>	<p>제4조(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① <u>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u> 정한다.</p> <p>(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1”과 같이 정한다.</p>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안 번호	6
----------	---

제출년월일 : 1998. 8. 19.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및 배출방법(안 제4조 및 제5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안 제6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안 제7조)
-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그 기준(안 제8조 제2항, 안 제14조 제1항 별표2)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칙제정의 근거 확보(안 제11조)

3. 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 (1995. 8. 4. 법률 제4970호)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1996. 1. 19. 대통령령 제14897호)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1997. 7. 19. 환경부령 제27호)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별표4호 제5호의 가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한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 3.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 제3호,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생이용 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용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자체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재활용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토록하고 자체 감량화처리 할 때에 발생된 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중 파쇄기, 압축기, 탈수기에 의한 감량은 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1”과 같이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구청장은 분리배출 지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 제9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축산가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규칙제정)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의 사용개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날로 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규칙 별표4의 5호에서 정한 기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본조례 공포일을 이 조례 제7조 제1호의 사업개시일로 보며 이 사업장 등이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출한 의무이행신고서는 본 조례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별표1>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

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의 산정

- 최종판매가격은 수거운반수수료 + 봉투제작비 + 판매이윤으로 산정하되, 필요시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별도 산정.
 - 처리비용(재활용비용)은 쓰레기를 수거, 운반, 최종처리 또는 재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산
 - 봉투제작비는 쓰레기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 판매이윤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산정

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수수료 산정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별도 산정·부과
 - 전용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 부피기준시 : $(10 \text{ l 용량 봉투가격} \div 10) \times \text{월간배출량}(\text{l})$
 - 중량기준시 : $(10 \text{ l 용량 봉투가격} \div 10) \times \text{월간배출량}(\text{kg}) \times \text{환산계수}(\text{가정 } 2 \text{ l/kg, 사업장 } 1.3 \text{ l/kg})$

<별표2>

과태료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폐기물관리법	1.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 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3.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6조 제2항 관련)	30	50	100

<별지 제2호서식>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년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 활 용			
		자가감 량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감량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 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3호서식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출 고 자 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input type="checkbox"/>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급식인원 : 명
	<input type="checkbox"/> 음식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대규모점포 : 사업장 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 면적 : m ²
	<input type="checkbox"/> 호텔·콘도 : 객실수 : 실

연간 음식물 쓰레기 총발생량	kg/년
-----------------	------

처 리 실 적

자 가 처 리	감량처리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 리 량 (kg/년)	부 산 물 처 리		
				부산물발생량	처리 방법	처 리 자

재 활 용	자가재활용의 경우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위탁량	재활용방법	업체명	업종	주 소 전 화

위와 같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199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영등포구청장 귀하